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사유 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공시합니다.

1. 선임근거 : 2023년 제2차 이사회 의결 (2023.03.30)

2. 선임내용

구분	성명	직위	선임일자
이사회 의장	문규영	기타비상무이사	2023.03.30
선임사외이사	최세학	사외이사	2023.03.30

3. 선임사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소집과 안건의 주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사회 안건, 운영 등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은 이사가 의장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년간 이사회의 의장을 역임하여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사회에 부의되는 각종 현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문규영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회 의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사들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